종 합 감 사

- 2026년 道 소속기관 종합감사 -

감 사 결 과 보 고 서

2026. 8.

경기도 감사위원회

【감 사 1 과】

목 차

Ⅰ. 감사실시 개요 ····· 1

1. 감사배경 및 목적 ····· 1

2. 감사개요 ····· 1

Ⅱ. 감사결과 ····· 1

1. 지적사항 총괄 ····· 1

2. 감사총평 ····· 2

3. 주요 지적사항 ····· 2

4. 향후계획 ····· 7

Ⅲ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····· 8

1. 본처분 ····· 8

2. 현지처분 ····· 8

Ⅰ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“2026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” 에 따라 도 소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위법·부당 사례 발굴 및 책임행정 강화

○ 복무관리, 근무실태 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2. 감사개요

○ 감사대상: 건설본부[1팀], 보건환경연구원[2팀], 동물위생시험소[3팀], 인재개발원[4팀]

○ 감사기간: ’26. 7. 6. ~7. 10. (5일) ※ 사전조사: ’26. 6. 29. ~ 7. 3. (5일)

○ 감사범위: ’20. 2. 1. 이후 업무 전반 ※ 인재개발원은 ’20. 3. 1. 이후

○ 감 사 반: 감사단장(감사1과장) 등 4개 팀 19명 (도민감사관 4명 별도)

3. 감사결과 처리

○ 감사위원회 심의: 2026. 8. 24.(월)

Ⅱ 감사결과

1. 지적사항 총괄

구분		행정상 (건) 계	기관경고	시정	주의	통보	신분상 (명) 계	중징계	경징계	훈계	재정상 (천 원) 계	추징	회수	환급
계	본처분	28	1	9	16	5	-	-	-	-	3,259	-	3,259	-
	현지처분	6	-	2	3	2	-	-	-	-	778	-	699	79
건설본부	본처분	11	-	4	5	2	-	-	-	-	355	-	355	-
	현지처분	1	-	-	-	1	-	-	-	-	257	-	257	-
보건환경연구원	본처분	7	1	2	5	1	-	-	-	-	1,332	-	1,332	-
	현지처분	2	-	1	1	1	-	-	-	-	167	-	167	-
동물위생시험소	본처분	8	-	1	6	2	-	-	-	-	1,216	-	1,216	-
	현지처분	1	-	-	1	-	-	-	-	-	-	-	-	-
인재개발원	본처분	2	-	2	-	-	-	-	-	-	356	-	356	-
	현지처분	2	-	1	1	-	-	-	-	-	354	-	275	79

※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(주의·통보 동시 처분 등)

2. 감사총평

○ 이번 “도 소속기관 종합감사”는 2020년 2월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실시된 감사로, 제보, 언론보도, 도의회 지적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였음

○ 감사결과,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소홀,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소홀, 연구실 설치·운영 및 약품 등 관리 부적정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, 건설공사 추정가격 산출 업무 소홀,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, 위험성평가 업무 소홀, 보통예금계좌 초과 입금액 발생 미처리 등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

○ 특히 소속기관별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, 채용절차 누락 및 미준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(주의 2건)

○ 아울러 정기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모든 소속기관에서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사례가 공통 적발된 바, 주요 위반 사례 전파를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

3. 주요 지적사항

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소홀

○ 건설본부 가과 등 3개 과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라, 2024년 1월부터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 발주하고 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,

○ ‘20○○년 ㄱ계약’ 등 ○○○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

조치 사항 ➡ - 건설공사 전자카드제 시행 업무 철저 **(주의)**

2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소홀

○ 건설본부 나과는 20○○년 ○월 'ㄴ 구입' 계약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함

○ 이 과정에서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격을 포기하였는데도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하지 않았으며, 이로 인해 다원이 해당 업체와 20○○년 ○○월 약 2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함

조치 사항

-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 철저 **(주의)**

3 연구실 설치·운영 및 약품 등 관리 부적정

○ 보건환경연구원 라원은 고위험연구실 바닥 안전구획을 표시하지 않았고, 출입구 및 주 출입통로에 유리기구·진열장 등을 적재·배치하였으며, 일반 냉장고를 비치하여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 수칙을 위반함

○ 마부 등 5개 부서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(최소 4일~최대 6년) 폐기할 약품을 일반 약품과 분리·식별 없이 혼합 보관하고, 유효기간을 제조일자로 착오하는 등 약품 관리를 소홀히 함

○ 바부 등 7개 부서는 약 3,000개 약품 등의 물품검사조서상의 납품연월일과 약품 수불대장의 입고일자를 서로 다르게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최대 63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수불 관리를 소홀히 함

조치 사항

- 연구실 설치·운영 및 약품 등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**(기관경고)**
- 연구실 설치·운영 기준을 숙지 및 준수, 약품 등 구입·관리 업무 철저, 연구실 운영 위반 사항 조치, 약품 등의 입·출고 및 재고 현황 정리 등을 이행 **(시정)**
- 약품 수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 **(통보)**

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

○ 보건환경연구원 사과(계약), 아부(사업)는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 시 최초 입찰 참가자격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지정·의뢰하고,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(20○○년, 97,592천 원)을 체결함

○ 자원은 경쟁제품(실험용세척기)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 및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직접생산자가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(20○○년, 38,313천 원)을 체결함

○ 차부는 수의계약 체결 후 납품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타사(SMEG) 완제품을 납품하였는데도,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를 완료·승인(20○○년, 66,880천 원)함

조치 사항 ➡ -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 철저 **(주의)**

5 건설공사 추정가격 산출 업무 소홀

○ 동물위생시험소는 20○○년 ○월부터 20○○년 ○월까지 'ㄷ공사' 등 8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, 규격서·설계서 작성 및 소요 공정·단가 검토를 거쳐 추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는데도,

○ 관련 업체가 제출한 최저가 견적서의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견적금액을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정가격 산출 및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함

조치 사항 ➡ -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 철저 **(주의)**

6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

○ 동물위생시험소는 20○○~20○○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응시자의 자격·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응시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였으며, 특히 20○○년과 20○○년에는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전형 합격 배수 기준(2~4배수)을 초과하여 응시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

○ 20○○~20○○년 채용 공고문 작성 시 규정된 가점 사항, 동점자 처리 기준, 구체적인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규정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하였고, 2023년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(피성년후견인) 대신 개정 전 표현을 그대로 공고함

○ 20○○년 면접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에게 만점 기준 가점(2점) 대신 획득 평균점수의 5%(0.95점)를 잘못 적용하였으며, 20○○년 면접시험 결정서의 위원 서명 누락(○건) 및 20○○년 평정점수표의 응시자 성명 누락(○건) 등 채용 서류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

조치 사항 ➡ -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높이는 방안 마련,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철저 **(주의)**

7 위험성평가 업무 소홀

○ 인재개발원 카과는 원내 예초작업 중 돌멩이 비산(튐)으로 인해 작업장 인근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20○○년(○회), 20○○년(○회)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,

○ 해당 작업을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거나 비산 방지 등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·실행하지 않음

조치 사항 ➡ -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 철저 **(주의)**

8 보통예금계좌 초과 입금액 발생 미처리 등 관리 소홀

○ 인재개발원 타과는 일시 보관 후 반환·세입 처리해야 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주기적인 잔액 검사를 통해 초과 입금액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,

○ 퇴직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금 미환급(○건, 26,490원), 공무직원 채용 면접위원 소득세 등 미납부(○건, 52,800원), 연가보상비 환수액 세입 미처리(○건, 275,640원) 등 총 ○건(354,930원)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 환급 또는 세입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(2026년 7월)까지 계좌에 초과 입금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

조치 사항 ➡ - 개인별 환급(26,490원)·납부(52,800원) 및 도금고 세입처리(275,640원) 이행 **(시정)**

4. 향후계획

○ 감사대상 소속기관에 처분요구서 통보

※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 제3항의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갈음

○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간 운영 및 결과 통보

〈 감사결과 조치 〉

▷ **행정·재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 조치 후 보고**

- 재심의 신청 →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
※ 근 거: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및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

○ 감사정보시스템 자료입력 및 종합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

○「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」시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여부 점검

Ⅲ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1. 본처분

○ 행정상 조치: 28건 (기관경고 1, 시정 9, 주의 16, 통보 5)

○ 신분상 조치: 1건 (훈계 1)

○ 재정상 조치: 3,259천 원 (회수 3,259)

“표 생략”

2. 현지처분

○ 행정상 조치: 6건 (시정 2, 주의 3, 통보 2)

○ 재정상 조치: 778천 원 (회수 699 / 환급 79)

“표 생략”